

국외제조사에 의한

[] 선임

[] 해임

사실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	처리기간 7일
신고인 (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)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	
	소재지(법인)		
	(전화번호: , 팩스번호:)		
국외제조사	상호(명칭)	제 조 국	
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전자우편:)	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 , 팩스번호:)	
국내 수입자	상호(명칭)		
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전자우편:)	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 , 팩스번호:)	
구분	[] 살생물물질 [] 살생물제품 [] 살생물처리제품		
살생물제 정보	살생물물질명·제품명		
	고유번호(CAS No. 등) (살생물물질의 경우)		
	살생물제품유형		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외제조사에 의하여 위 살생물제의 국내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

[] 선임

[] 해임

된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

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신고인, 국외제조사, 국내수입자 및 살생물제 정보 등 신고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1. 국내 수입자란은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2. "국외제조자의 소재지(사업장)"란은 국외제조자가 해당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.
- 3. "살생물제 정보의 고유번호(CAS No. 등)"란은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